

☞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[국세기본법 제47조의4, 국세징수법 제21조]

가. 개정취지

-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납부고지 전 : 납부불성실가산세 ①) - 미납세액 × [납부기한의 다음날 ~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] × 1일 0.03%	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지연가산세(①+②)로 통합 ① 지연이자 성격 ①+③은 통합 - 미납세액 × [납부기한의 다음날 ~ 납부일] × 1일 0.025% [2019.02.12.이후]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[2019.01.01.이후]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내용

- 2020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✓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[납부지연가산세[2018.12.31 제목개정]]

✓ 지방세기본법 제55조 [납부지연가산세[2020.12.29 제목개정]]

✓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[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[2020.12.22 제목개정]]

✓ 지방세기본법 제56조 [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[2020.12.29 제목개정]]

☞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[국기령 § 27조의4, 관세령 § 39]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지연가산세율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미납세액 × (납부기한 다음날 ~ 납부일) × 1日 0.025% [연 9.125%]	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日 0.019%~0.022%* 범위 내 결정 * 연간 환산이율 6.94% ~ 8.03% ※ 시행령 정기 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

<개정이유> 납세자의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이 영 시행일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.

다만, 이 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

☞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[국기법 § 47의4 · 47의5, 관세법 § 42]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100만원 미만*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** * ①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 · 납부고지서별 세액 ② 체납된 관세 ** 일할분 (日 0.025%)만 면제 (체납 일시 부과분 (3%)는 과세)	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기준금액 상향조정 : 100만원 → 150만원

<개정이유>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 ·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

<적용시기> ‘22.1.1.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